

[별지 제1호의 11서식<2024.6.1.부터 적용>]

해외 진출 실적

수출실적 년 월 일	수출품명	수출금액	주요 수출국	비고
○ 주요 수출실적 및 현황(500자 내외 기술)				

<제출서류> (해당사항에 √ 체크표시)

신인도 가점 / 수출 3%	직접 수출	☐	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(발급대행 기관 포함)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(신청)서, 수출신고필증(수출이행)
	간접 수출	☐	외화획득용 원료·기재 구매확인서, 영세율 세금계산서, 대금입금 확인서류, 입금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(신청)서, 수출신고필증(수출이행)
		☐	내국신용장, 영세율 세금계산서, 대금입금 확인서류, 입금은행 발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(신청)서, 수출신고필증(수출이행)
일반지정 연장대상 (수출 오백만불), 장기지정 연장대상 (수출 사백만불)		☐	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(신청)서
수출 30%		☐	국세청 발행 과세표준증명,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(신청)서

- 수출 오백만 불 또는 사백만 불, 수출 30%의 경우에도 간접수출은 ‘신인도 가점 / 수출3%’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
-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(신청)서는 해당 업체명으로 발급받아야 인정
- 제출서류 중 수출신고필증(수출이행)은 제조자가 신청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하며,

제조자가 상이하거나 미상인 경우 불인정(다만, 간접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가 상이하거나 해당서류의 신고인기재란 등에 신청업체가 제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)